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이하 '상상대로'라 한다)가 시설설비 대여에 따른 일반원칙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효율적인 행사준비 및 진행을 돕고 필요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개인·단체가 상상대로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차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상상대로의 대관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상상대로의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 승인을 받은 개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1. 상상대로의 대관 시설은 지하 1층의 다목적실, 지상 2층의 세미나실, 강의실1, 2 공간과 그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및 기자재를 의미한다.
2. 대관은 월~금 10:30-21:30, 토 10:30-12:00, 13:00-15:30에 가능하며 (토 12:00-13:00는 상상대로 break time으로 대관 불가), 특수한 경우, 상상대로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기본 운영 외의 시간에 대관이 가능하다.

제4조(대관 신청) 대관 신청인은 상상대로 홈페이지(<http://asyouthspace.kr>)

내 대관 신청에서 대관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대관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정기대관이 필요한 경우 월 10회 이내로 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일 대관 취소 시 월 10회 카운팅 포함
3.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단위로 대관을 신청한다.
4. 대관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다.
5. 대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 담당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5조(대관 승인 및 제한)

1. 상상대로는 대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양식 검토-대관승인 심의-대관승인여부 통보’의 절차로 대관을 심의 및 승인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 전후로 제한할 수 있다.
 - ①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및 행사
 - ②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연 및 행사
 - ③ 상상대로의 운영목적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 ④ 공연 또는 행사가 상상대로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⑤ 상상대로의 운영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 소란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상품, 유료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익적인 행사로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⑦ 상상대로의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상대로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 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⑧ 제9조의 대관 자격이 정지되어있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제6조(대관 취소)

1. 신청인은 대관 취소 시 전화로 담당자에게 대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사용 예정일의 1일 전까지 대관 취소 신청을 해야한다.

제7조(대관 자격정지)

1. 대관 승인 후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 사실이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간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① 신청인이 대관 취소 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상상대로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대관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사용한 경우
 - ③ 대관 시설이 분실 및 파손되었을 때,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④ 이용자가 신청서와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한 경우
 - ⑤ 대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만든 경우

제8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대관규정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대관 시설이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대관 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양도 불가하다.
4. 이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상상대로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해야 한다.
5. 이용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상대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1. 상상대로는 이용자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하여 대관 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대관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분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이용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기타 이용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 법규 등에 의한다.

제10조(적용규정)

규정은 상상대로와 이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상대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상상대로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